

농촌 특정빈집 조치(철거)명령 공시송달 공고

「농어촌정비법」 제65조의5제1항에 의하여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·개축·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,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는 60일 이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나, 건축물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불가능하여 조치(철거)명령을 통지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6일

김 천 시 장



1. 공 고 명: 농촌 특정빈집 조치(철거)명령 공시송달 공고
2. 법적근거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5조의5(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)
3. 공고대상 및 내용

연번	빈집 위치	소유자	용도	구조	심의결과 및 조치 내용
1	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용호리 483-5, 494-1	미상	주택	완파	철거
2	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구야리 521-5	미상	주택	흙벽돌조	철거
3	경상북도 김천시 백옥동 503 (내촌1길 5-11)	미상	주택, 창고	흙벽돌조	철거

※ 기타 필요사항: 건축물을 철거(해체)하려는 경우,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(건축물 해체의 허가)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(신고)를 하여야 함.

4. 공고기간: 2026. 7. 16. ~ 9. 14.(60일간)
5. 공고방법: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 및 김천시청 홈페이지

6. 기타사항

- 가. 상기 특정빈집에 대하여 60일 이내 철거를 요청하는 바이며, 임하지 않을 경우 「농어촌정비법」 제65조의5(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)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다만, 천재지변 및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다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김천시청 건축과 건축시설팀(☎054-420-678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